

## 디지털 자산 반환 신청서

## [ 송금인 정보 ]

법인명 : 주식회사 한나묵

사업자등록번호 : 123-00-12345

대표자 성명 : 한나묵

대표자 휴대전화번호 : 010-1234-5678

- 송금인은 20 26 년 1 월 7 일 디지털 자산의 출금이 이루어진 주소(이하 "FROM 지갑주소")로부터 두나무 주식회사가 수취인에게 발급한 입금 주소(이하 "업비트 수취인 주소") 로 디지털 자산 [ BTC ] [ 송금량 1.23456789 수량 ] 개를 송금하였습니다.
- 송금인은 위 송금이 특정금융정보법 및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준수사항 (트래블룰<sup>1</sup>,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sup>2</sup> 등)을 준수하지 못하여 수취인에게 입금 처리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송금인 본인에게 "출금 수수료를 제외한 디지털 자산" 을 다시 반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 본 건 디지털 자산이 반환되는 주소는 원칙적으로 "FROM 지갑주소"이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FROM 지갑주소"가 아닌, 계정주 확인 서비스가 연동된 해외 거래소 지갑, 위험평가를 통과한 해외 거래소 지갑, 업비트에 등록 가능한 개인지갑으로만 반환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lt; FROM 지갑주소 반환이 불가능한 사유 &gt;

- FROM 지갑주소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관련 주소로 확인되는 경우
- FROM 지갑주소가 당사 지정 폰지 사기 의심 업체의 주소로 확인되는 경우
- FROM 지갑주소가 거래소의 핫월렛 주소이고 출금처에서 입금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 FROM 지갑주소가 컨트랙트 주소이거나 자산이 유실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FROM 지갑주소가 2차주소 필수 주소인 경우 (XRP, A 등 D.tag, Memo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전송이 불가능 주소
- 출금처에서 해당 디지털 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되었거나 네트워크가 전환되어 입금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출금처 서비스가 중단되었거나 계정을 탈퇴하여 로그인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위 1. 내지 7 에 준하여 FROM 지갑주소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

- 송금인은 위 사유로 FROM 지갑주소 반환이 불가하여 "별도로 제출한 반환받을 지갑주소" 로 반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해당 지갑주소가 실제 송금인이 입·출금 권한을 가진 지갑주소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서류들은 위·변조되거나 불법·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송금인은 반환받을 지갑주소의 오기·오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책임이 송금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디지털 자산 입·출금의 특성에 따라 거래소 계정 내 입금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수취인에게 발급된 입금주소를 거쳐 거래소 지갑에 본 건 디지털 자산이 입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바, 수취인이 본 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두나무 주식회사는 본 건 디지털 자산의 반환에 관하여 수취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 송금인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본 동의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본 건 입금 시도 건에 대한 두나무 주식회사의 조치 및 본 동의서에 따른 디지털 자산의 반환과 관련하여 두나무 주식회사를 상대로 일체의 민사·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26 년 1 월 7 일

작성자(법인명) : 주식회사 한나묵

두나무 주식회사 귀중



<sup>1</sup>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0

<sup>2</sup> 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4호